

국외 거주 친족에 관한 부양 공제 등의 적용에 대해서.

이타바시구 과세과

헤세이 27 년도 세제 계정으로 일본 국외에 거주하는 친족에 대한 부양 공제 등을 신고할 경우 「친족 관계 서류」 및 「송금 관계 서류」의 첨부 또는 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어느 서류든지,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본어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헤세이 29 년도 이후의 개인 주민세의 신고시에 필요합니다.

◎ 「친족 관계 서류」란

다음의 ①또는 ②의 서류에서, 국외 거주자가 신고자 본인의 친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① 다음의 A 및 B의 서류 (어느 한 쪽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A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과 호적이 같이 나와 있는 것)의 사본 기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발행한 서류로 그 국외 거주자의 부양 가족이 신고자 본인의 친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B 국외 거주 친족의 여권 (PASSPORT) 사본

②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 공공 단체가 발행한 서류로 그 국외 거주자의 부양 가족이 신고자 본인의 친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친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이 기재가 있는 것에 한합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

◎ 「송금 관계 서류」란

이하의 서류로, 신고자 본인이 그 해에 국외 거주 친족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 충당을 위해 지불할 때마다 각각의 사람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해당 연도 분마다, 각 부양 친족마다 필요합니다.)

① 금융 기관의 서류 또는 그 사본으로, 금융기관이 실시하는 외환 거래에 의해 신고자 본인이 국외 거주 친족에게 지불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이른바 신용 카드 발급 회사의 서류 또는 그 사본으로, 신고자 본인이 신용 카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 거주자가 사용하기 위해 발행된 카드로 그 사용 금액의 지불을 신고자 본인이 한 것 (이른바 가족 카드) 에 관련되는 것.

※국외 거주자가 복수로 두명 이상일 경우 , 송금 관계 서류는 부양 공제 등을

적용하는 국외 거주 부양 친족 인원수마다 각각 필요합니다.

(예) 아내와 자녀 분의 생활비를 아내 명의 계좌에 합쳐서 송금한 경우, 아내의 부양만 인정됩니다.

(*부양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 이름의 계좌로 따로따로 송금을 해야합니다)

※친족 관계 서류 또는 송금 관계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친족의 부양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 거주 친족에 관련된 부양 공제 등의 재검토에 대해서 (레이와 6년도 이후)

세제 개정에 의해, 국외 거주 친족에 대해서,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 친족(공제 대상 부양 친족)의 요건이 엄격화되어, 레이와 6년도 이후, 30 세 이상 69 세 이하이며, 아래의 어느 것에도 해당 하지 않는 자는 부양공제의 적용 대상외가 됩니다.

- ① 유학으로 국내에 주소 및 거처가 없어진 자
- ② 장애인
- ③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전년에 있어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한 지불을 38 만엔 이상 받고 있는 자

국외거주친족의 연령	16 ~ 29 세	30 ~ 69 세	70 세 ~
부양공제대상	대상이 됨	대상이 안됨※	대상이 됨

※상기① ~ ③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함

또한, 상기의 부양공제의 대상외가 되는 국외 거주 친족에 대해서는, 개인 주민세 균등할 및 소득할의 비과세 한도액, 개인 주민세 균등할의 세율 경감 등의 산정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